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제강(주)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 3도 화상, 2) 좌측전완부 심부열창, 3) 좌측 수지 및 완관절 신전건파열, 4) 좌측요골 신경분지 파열”로 흉터 장해 판정만 받자 신경장해 판정을 요구한 경우

(91-66호 91. 4. 22. 취소)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송○○

주소 : 구로구 구로5동

원처분 청구인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동

주소 : ”

소속 : ○○제강(주)

주문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이 1990. 10. 31.자 “송○○”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송○○”(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0. 10. 3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제강(주)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3. 17.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 3도 화상, 2) 좌측전완부 심부열창, 3) 좌측수지 및 완관절 신전건파열, 4) 좌측요골 신경분지 파열”로 인천세광병원 및 산업재활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0. 9. 28.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해를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은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

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3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원손은 50%도 쓰지 못하고 특히 제 1, 4, 5수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2. 4. 송○○)
2. 답변서(1991. 2. 6.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0. 10. 송○○)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0. 10. 31. 원처분청)
5. 심사결정서 사본(1990. 12. 22. 심사관)
6. 진단서 사본(1990. 9. 28. 산업재활원)
7. 진단서 사본(1990. 11. 6. 인천세광병원)
8. 신체장애감정서(1991. 4. 15. 한림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타)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제강(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3. 1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 3도 화상, 2) 좌측 전완부 심부열창, 3) 좌측수지 및 완관절 신전건파열, 4) 좌측 요골신경분지 파열”로 인천세강병원

및 산업재활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0. 9. 2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산업재활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1) 우하지 좌상지(전완부 및 상박부) 화상반흔과 피부 소양감, 2)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완관절 및 수지부의 근력약화, 방사통, 3) 좌주관절 운동범위 : 320도, 4) 좌 완관절 운동범위 : 150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1) 좌 전완부 노출면에 수장대 이상 반흔, 2) 요골 신경손상으로 좌수지부 근력약화 및 통증이 남은 자, 3) 좌 주관절 완관절 운동범위 정상” 등으로 보아 좌측 주관절의 기능장해와 상병부위의 흉터장해 및 통증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주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범위가 320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350~365도의 1/4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흉터장해 역시 원처분과 같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됨이 명백하나 신경증상의 경우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제출한 인천세광병원 담당주치의 진단서상 “좌수주관절하 요골신경마비증으로 좌수지신전 불능 및 요골측 감각신경이상 등이 있음”의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타에 청구인의 장해감정을 의뢰한 바 “좌요골신경부분 파열 후유증으로 요골신경 분포 부위인 좌무지 및 시지와 그 배부에 감각이상이 있어 수지의 촉각장애가 있음”의 감정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수상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고 인정되고 흉터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운(주)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 고도, 2) 뇌좌상, 3) 뇌 경막외 혈종 고도”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91-185호 91. 6. 24. 취소)

재 결 서

재 심 사 청 구 인 성 명 : 남○○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남구 범박동

원 처 분 청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 명 : 상 동

주 소 : ”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상 동

주 소 : ”

소속 : ○○상운(주)

주 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1. 15.자 “남○○”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남○○”(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1. 15.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상운(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7. 28.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 고도, 2) 뇌좌상, 3) 뇌 경막외 혈종 고도”로 부천 세종병원에서 요양 가

료후 1990. 8. 13.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뇌손상 후유증이 격심하여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4. 2. 남○○)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5. 2.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0. 12. 26. 남○○)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1. 15.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심사결정서 사본(1991. 3. 22. 심사관)
6. 소견서 사본(1991. 4. 8. 세종병원)
7. 신체장해상태감정서(1991. 6. 10. 한림대학교 의료원의과학센타)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상운(주) 소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

여 오다가 1988. 7. 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 고도, 2) 뇌挫상, 3) 뇌 경막외 혈종 고도”로 부천세종병원에서 요양 가료 후 1990. 8. 13. 치료 종결되었는바 세종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개두술로 인한 두개골 결손(9×5cm)이 있으며 지속적인 두통, 현훈감, 집중력저하, 수면장애, 정신무력감 등을 호소해 왔으며 향후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두개골골절, 뇌경막하혈종 등에 대한 치료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임”이며 한림대학교의료원의과학센타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신체장해상태 감정 소견은 “감정의 둔마 및 두통과 두증감이 있고 현훈이 잔존함. 따라서 사고의

집중이 되지 아니하며 기억력 장해가 있고 항상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음.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장해가 있음”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뇌경막외 혈종 등에 대한 개두술을 시행한 후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신경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14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 등급 제12급 12호 적용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봉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봉을 끊습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坦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